



강화되는 금융소비자보호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고,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임.

-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과 ‘금융소비자보호원’ 설치를 위한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입법을 다시 추진함.
- 이번 제정안 및 개정안은 ‘금융소비자보호원’ 설치,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, 판매행위 규제, 과징금 제도 도입, 손해배상책임 확보, 대출모집인·신규 업자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함.

■ 또한, 저축은행 부실경영 및 불법행위 방지,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된 「상호저축은행법」 개정안의 입법도 재추진됨.

- 대주주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금감원의 검사 및 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이 포함됨.
-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를 제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됨.
-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으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조속한 법 개정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
■ 재입법이 추진되는 제정안 및 개정안은 5월 11일부터 10일 동안의 입법예고와 이후 6월까지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.

(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입법예고 등, 금융위, 5/10)